

2025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14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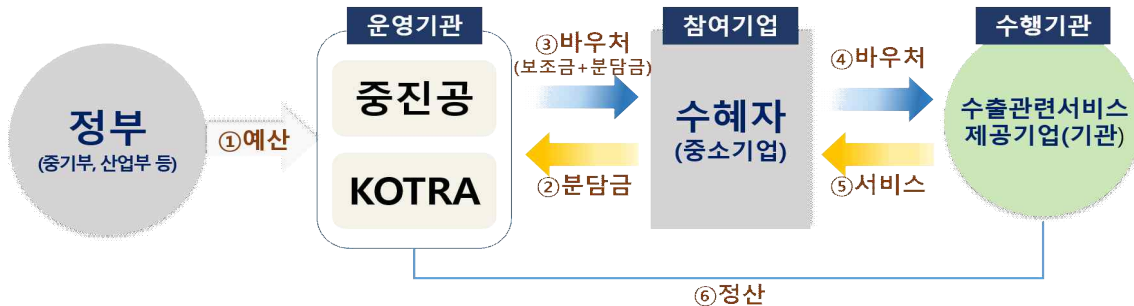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 (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분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 사업 구성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3개 트랙** (일반, 레전드 50⁺ 전용, 테크 서비스 전용)으로 구분되며, **4차례 공고 추진** (총 3,500개사 내외 지원)

* 각 모집공고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

(ex)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기업 및 레전드50⁺기업의 경우에도 1차 공고에 신청 가능

< '25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 >				
구분	공고/신청시기	모집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1차 공고 (일반)	(공고) '24.12.30 (신청) '25.1.7~23	2,400개사 내외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수출실적에 따라 상이 * 내수(30백만원)~강소(100백만원)
레전드 50⁺ 전용*	(공고) '25.3월 (신청) '25.3월	300개사 내외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 」 참여기업	수출실적에 따라 상이 * 내수(30백만원)~강소(100백만원)
테크서비스 전용**	(공고) '25.3월 (신청) '25.3월	400개사 내외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기업	35백만원
2차 공고 (일반)	(공고) '25.5월 (신청) '25.5월	400개사 내외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수출실적에 따라 상이 * 내수(30백만원)~강소(100백만원)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 대상으로 한정

**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시 ①테크서비스 특화 서비스(클라우드 또는 데이터센터 비용, UX·UI개선 비용 등)와 ②수출바우처 14개 서비스 메뉴판 활용 가능

※ 모집차수별 세부 공고일정, 모집규모, 세부 지원내용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레전드50⁺, 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공고문 참조**

※ 바우처 방식의 수출서비스 지원사업은 **여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며,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 형태의 사업(예시) >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세부명칭)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활동에 필요한 14개 분야 메뉴	산업 및 단계별 상이 *30~100백만원
농식품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기업	수출활동에 필요한 32개 메뉴	수출구간별 상이 *5~1,000백만원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외식기업 중 ①해외 진출 희망 가맹본부, ②직영사업자	수출활동에 필요한 13개 메뉴	30백만원 이내
해수부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수산식품 수출 중소기업	수출활동에 필요한 19개 메뉴	수출단계별 상이 *50~220백만원
지자체	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ex) 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 충북 수출창출기업바우처, 광주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지역 수출유망기업	수출활동에 필요한 14개 분야 메뉴	지역별 상이

2. 수출바우처 1차 모집 개요

□ 1차 모집규모 : 2,4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5. 3. 1. ~ 2026. 1. 31.(11개월)

<수출 바우처 서비스 활용 지원 기간>

◆ (시작 시점) 신청·접수,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중 협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나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금 활용을 위해 비용지원은 '25년 3월 1일 활용 서비스부터 소급 적용

◆ (종료 시점) '25년 11월 30일까지 수행 완료*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 (단, 전시회의 경우, 사업기간 내 개최 시 정산 가능)

* 수행완료 : 수행기관이 바우처 서비스를 완료하고,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정산요청' 등록 및 총괄 수행기관 지정 웹하드에 정산 관련 서류 등을 접수 완료하는 것을 의미

※ 2월중 개최되는 전시회에 수출바우처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 2차 모집 공고에 신청 (수출바우처 2차 사업기간 : '25.6.1~26.2.28)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규모) 기업의 '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세부사업 (단계)	지원 대상	국고지원한도 (백만원)
내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30
	튼튼한 내수기업*	45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30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 튼튼한 내수기업: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을 별도 선정하여 지원한도 우대

- 간접수출 실적 보유 기업의 경우,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액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강소단계로 지원 가능하며,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에도 신청 가능

□ (국고 보조율) '23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적용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지원한도 우대 기업

-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은 튼튼한 내수기업 트랙으로 별도 구분하여, 내수트랙 대비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성능인증기업, TIPS 성공 졸업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선정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20% 확대

*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 '24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3년 대비 '24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23년, '24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서류 제출 必)

- 수출 고성장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수출 고성장 기업 기준) '24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우대항목에 중복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대적용

※ 예산 상황에 따라 우대사항 해당기업 중 평가점수 순으로 일부만 우대지원 가능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상품(재화) 수출실적은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을 통해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외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서비스수출실적(서비스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등은 증빙 서류 제출 시에만 합산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무역통계진흥원) : 운영기관에서 조회 ○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KTnet) - 서비스수출실적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수출 바우처 졸업제

- 수출바우처 사업에 1회 이상 참여 가능하나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각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바우처) 합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23년 지원금(바우처)부터 합산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90, (성장) 140

※ 강소단계의 경우 최대 발급한도 적용 제외

※ 튼튼한 내수기업 선정은 기업당 1회로 한정하며, 튼튼한 내수기업 지정이력이 있는 기업은 내수단계에서 최대 90백만원 발급 한도 적용

※ 수출국 다변화성공, 수출고성장기업으로 선정되어 바우처 지원한도가 확대된 경우, 확대분은 단계별 지원한도 합산 시 포함되지 않음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5.3.1.일 기준)
 - *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농림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해수부)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자체) 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 광주시 기업맞춤형 수출사다리지원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과는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및 감점 부여

- 대상 : 최근 2년('23년, '24년)간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신청기업

* '24년 참여기업의 경우 '25년 2월 28일 기준 정산시스템상 '정산요청'단계의 바우처 금액 기준으로 사용률 확인

구분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23년도 이후 사업선정기업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4. 참여기업 신청 방법 및 사업진행 절차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 인증서 발급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유망단계 이상의 경우 수출바우처 신청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자동 신청되며, 미희망 기업은 ‘수출바우처 신청’만 체크 필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개요>

- **(개요)**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기업 지정 제도’로, 20여개의 유관 기관과 함께 수출자금 등 각종 우대혜택을 부여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
- **(대상)** ‘24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기업으로 수출실적에 따라 유망~강소+ 단계로 나누어 지정
 - * ‘24년도 수출실적 기준: 유망(10~100만불 미만), 성장(100~500만불 미만), 강소(500~1,000만불 미만), 강소+(1,000만불 이상)
- **(지원내용)** 수출지원사업, R&D사업, 정책금융, 보증·보험, 시중은행 금리·환거래 조건, 지자체 지원사업 우대 등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내 2025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모집공고문 참고([공고번호 제2024-630호](#))

□ (신청기간) **‘25. 1. 7(화) ~ ‘25. 1. 23(목)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조기신청 권장

□ 신청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필수	①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內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작성
	③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⑤	'21~'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선택 (희망시)	⑧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⑨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KTNET 발급본
	⑩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⑪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⑫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23~'24년) * 수출국다변화성공 기업 제출 필수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운영기관 요청 서류를 제출거부하거나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 서류 중 유효서류만 인정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①~②) 참가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통해 간편하게 제출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www.one-click.co.kr)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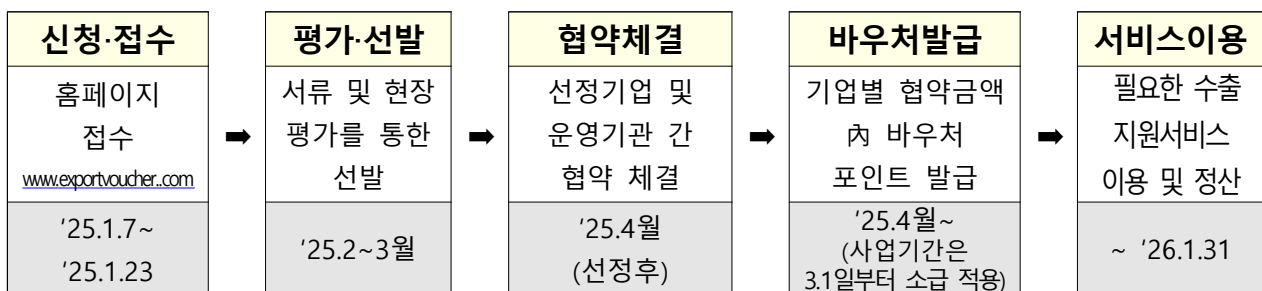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⑫)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간접 수출 실적증명서(KTNET*),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만 인정(구매확인서만 제출 시 인정불가)하며, KTNET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요
 -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적 기준은 '24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평가 절차

- ①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② (현장 평가)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출역량 등을 평가

* 강소단계 기업 중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지정을 함께 신청한 기업은 발표평가 必

□ 사업진행 절차



5.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4개 분야 8,000여개 서비스 등록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산권	특허·지재산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산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 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인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 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 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무역보험· 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 및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는 지원이 불가하며, 중기부 정산가이드 및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가능

6. 가점사항

구 분	가 점 항 목	가점
1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1
2	장애인 기업 또는 여성 기업	1
3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TIPS 성공 졸업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역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1
4	정책 우대 중소기업 : 명문장수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5	'24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유효기업)	1

* 가점은 기업당 최대 5점까지 인정하며, 가점 증빙은 현장평가 시 별도 확인

7. 유의사항

-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산업부·코트라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예시)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2025년 수출바우처사업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30%이상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 바우처 사용금액이 바우처 협약액의 85% 미만인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향후 2년간 사업 참여 제재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정산 시 운영기관이 보완 요청하는 서류를 영업일 기준 10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산 불가

-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정산 서류 검토·보완 등 정산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바우처 사용일정에 유의

- 동일 법인이라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이 이용한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사업자번호 기준)

* 예시) 법인 본사로 신청 및 선정 → 본사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지점(혹은 공장)으로 신청 및 선정 → 지점(혹은 공장)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8. 문 의 처

구 분	전 화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www.exportvoucher.com)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www.one-click.co.kr)	02-3771-1050

[서식1-참가신청서]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입력(참여기업 참고용, 스캔본 업로드 불필요)

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

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이메일					
	설립일자				법인등록번호					
	업종		제조업 / 비제조업		생산 품목					
	(본사)전화번호				(본사)팩스번호					
	(공장)전화번호				지역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점									
	공 장									
	지점(1) (해외 포함)									
	지점(2) (해외 포함)									
	담당자/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최근 3개 년도			'22년		'23년		'24년(예정)		
		매출액(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달러)	직접	달러		달러		달러		
			간접	달러		달러		달러		
			합계	달러		달러		달러		
종업원수(명)		명		명		명				
수출업력		년		사업참여이력		신규(), 재신청()회 (참여년도:)				
주요 인력 운영			없음		있음		부서명		인원	
	해외마케팅·영업 인력									
	연구개발인력									
수출 현황 및 목표	수출품목 및 서비스		현재							
			계획							
	주요수출국가 (3개국 이내)		현재							
			계획							
	목표금액(달러)									
주요 계열사		해당 시 작성								
신청 사업	☐ 수출바우처+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자동연계 지원 ☐ 수출바우처만 지원 중 택1									
사업 개요	* 동 사업 참여시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작성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이사 : (직인)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3.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서류,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6. 기업(신용)정보동의서, 7. 중소기업확인서 등

[서식2-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활용 동의서] - 온라인 동의(14p~18p)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kotra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kotra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 중소기업 관계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조회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행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등 ·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 코드,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kotra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KINET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I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수행사 등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 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 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I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수행사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고용정보 등 ▶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kotra에 제공하여, 중기부·중진공·kotra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와 통합정보시스템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용 알선을 제공받기 위해 무역협회 일자리센터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정보(공장등록증, 공장설립 등 승인서)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KTNET 무역정보 활용·제공 동의

제공 · 조회 목적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 이용시 거래지원 및 편의제공 ▶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등 거래선 확대 지원 ▶ 중소기업지원 등 공공기관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 무역사기 방지를 위한 공정 무역환경 조성 등
무역정보 활용 · 제공 항목	▶ 업체별 취급품목 or 품목별 업체정보 * 취급품목(품목분류번호, 품명), 업체정보(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 업체별 직·간접 수출입 실적을 기간별로 누적한 통계 ▶ 기타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전자무역문서 항목별 정보
제공 · 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KTNET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ex. 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무역진흥기관 : 무역관련 행정기관,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 ▶ 국내외 바이어(품목별 업체정보에 한함) ▶ 공공/민간 연구기관, 신용평가기관 및 기타 상기 무역정보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자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이용 사무 (이용목적)	담당자 확인 정보	동의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사업 지원 시 기업평가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및 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법인), 지방세납세증명(법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기부·중진공·지방청·kotra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기부, 중진공, kotra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지자체, 지역혁신기관)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관련 중진공 주관 사업 안내,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담당자명 :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① 중소기업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이용항목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이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수출바우처사업 사업계획서

☐ 수출마케팅 추진 계획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이 메 일		정부 지원비율			
	프로그램	추진기간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계
1		~			
2		~			
3		~			
4		~			
5					
.					
.					
.					
신청 ()건	사업기간 :	~	천원	천원	천원

상기 수출마케팅계획은 기업 자체판단에 의해 설계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수출마케팅 세부 추진 계획

가. 기업현황

회사명			설립년월일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지정이력(연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생산품						
매출액 (천원)	'22년		'23년		'24년(예정)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2년		'23년		'24년	
수출액 (단위 : 달러)	'22년		'23년		'24년	
	직접	간접	합계	직접	간접	합계
수출국가	(총 개국)					
수출상품(제품)						

나. 제품(상품)현황 및 수출필요성

○ 수출 제품(상품) 개요 (내수기업의 경우, 수출예정 품목 기술)

구 분	세부 내용			
생산(취급)품목*				
제품 개발현황(택일)	개발중(R&D진행)	개발완료	시제품 생산	양산단계
용도, 특성 및 수출현황, 수출 가능성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시장점유율	국내 (Domestic)		국외 (Overseas)	
	- 시장규모 : - 시장점유율 :		- 시장규모 : - 시장점유율 :	
경쟁업체 현황**	국내 :			
	국외 :			

* 주요 생산(취급) 품목 개요는 해외진출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

** 경쟁업체 현황은 경쟁업체 명, 시장점유율 등 기술

○ 수출(확대) 필요성

세부내용	
------	--

다. 목표시장 및 목표고객군

○ 목표시장

희망(기) 진출시장	
진출 희망국가	
선정사유*	
자체 진행현황	

* 진출 희망지역의 시장현황(현지 시장의 니즈), 자사 제품(상품)의 경쟁력 등을 기재

○ 목표고객군

목표고객군	
선정사유*	

* 제품 및 진출시장의 특성상 목표고객을 설정한 사유를 기재

라. 해외마케팅 준비현황

○ 수출 준비현황

수출인프라 구축도	
전담인력	
해외시장정보 획득 여부/경로	
해외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여부	
기수출 여부	
기타	

마. 수출마케팅 목표

○ 향후 목표

세부내용	- 단기 (1년내) - 중기 (2~3년) - 장기 (5년)
------	--